

투자위험등급 :
3 등급
[중간 위험]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JP 모간 이머징 마켓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JP 모간 이머징 마켓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JP 모간 이머징 마켓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홈페이지 : www.jpmorganam.co.kr ☎ 758-5200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jpmorgana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10 년 10 월 8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0 년 10 월 18 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 또는 매출 총액)	증권의 종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증권의 수: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 또는 매출 기간(판매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판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로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에 투자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대부분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화자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JP모간 이머징 마켓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A	C	C-F	C-W	C-E	C-S	UA	UC-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29905	29906	29907	29908	29911	29912	29913	2991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으로 분류됩니다.

나. 운용자산별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재간접형)로 분류됩니다.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중도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으로 분류됩니다.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으로 분류됩니다.

마. 특수형태 표시: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클래스)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UA 클래스 수익증권과 UC - E 클래스 수익증권에 관하여 전환형집합투자기구(“JP 모간 펀드 임브렐러 클래스”의 각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됩니다.

주) 상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제1부의 내용 중 4. 가. “모집의 내용” 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주) 모집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이 취소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의 내용: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하고자 하는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및 종류별(클래스별) 가입자격은 제 2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종류별로 모집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하고 모집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모집의 규모 및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나. 모집방법 및 내용: 이 투자신탁의 모집(매출)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 기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기간: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라. 모집장소: 이 투자신탁은 판매회사 본·지점을 통해 모집합니다.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www.jpmorganam.co.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인수인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인수의 방법으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상장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JP모간 이머징 마켓 증권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명 칭	JP모간 이머징 마켓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A	C	C-F	C-W	C-E	C-S	UA	UC-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29905	29906	29907	29908	29911	29912	29913	2991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0.9.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신탁 최초설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상기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투자기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업무위탁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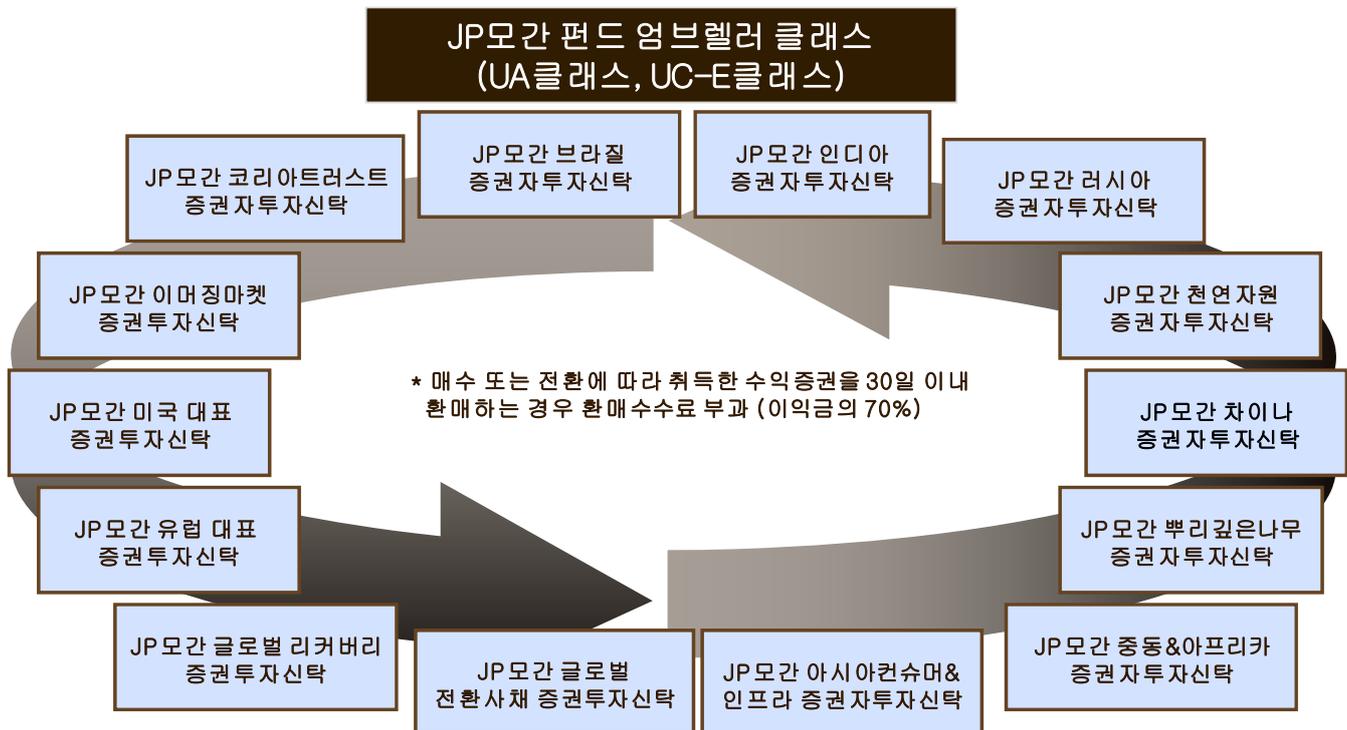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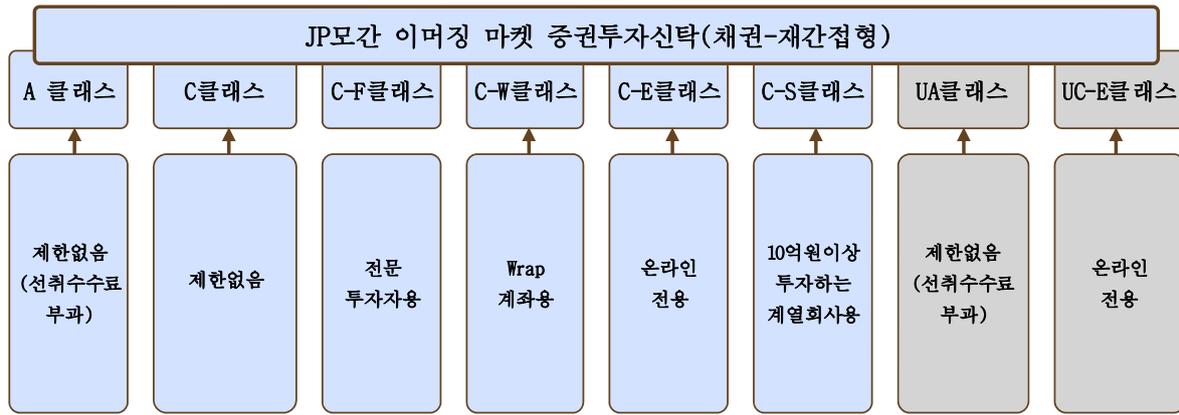
성명	출생 년도	직위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 현황(2010.06.30)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수탁고)	
기준환	1968	이사	16개	약 8,782억원	- 미시간 대학교 - 동서증권, 동원증권, 동부화재, CJ자산운용 -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3년간 변경내용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내용이 없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종류형집합투자기구 및 전환형집합투자기구(UA 클래스 수익증권과 UC - E 클래스 수익증권에 관하여)로서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① 채권형 집합 투자증권	50%초과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중 채권(전환 증권 또는 워런트 등을 포함합니다)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② 주식형 집합 투자증권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중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③ 기타 집합투자증권	50%이하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중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 (“기타 집합투자증권”)
④ 주식	50%이하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 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국내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하여 발행된 것 (“주식”)
⑤ 해외주식		외국법인들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주식”의 성질을 구비한 것 (“해외주식”)
⑥ 파생결합증권	40% 이하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
⑦ 채권	40%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채권”)
⑧ 해외채권		외국법인들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채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 (“해외채권”)
⑨ 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외국법인들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자산유동화증권”)
⑩ 어음	40%이하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증정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어음”)
⑪ 해외어음		외국법인들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어음”의 성질을 구비한 것 (“해외어음”)
⑫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법에 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식선물, 주가지수 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통화선물 및 통화선물옵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장내파생상품”)
⑬ 장외파생상품	10%이하	위 “장내파생상품”에 상응하는 주식 및 채권, 외국주식 및 외국채권 또는 통화와 관련된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⑭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어음(해외채권 및 해외어음 포함) 총액의 100% 이하	국내의 금리스왑거래. 단,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어음(해외채권 및 해외어음 포함)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어음(해외채권 및 해외어음 포함)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⑮ 증권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⑯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채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⑰ 증권의 차입	20%이하	상기 ① 내지⑧, ⑩ 내지 ⑪에 따른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⑱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⑲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50%이하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⑳ 금전의 차입	차입당시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금전의 차입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① 내지⑭, ⑱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① 내지 ⑱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신탁업자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① 집합투자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함. 이하 ① 내지 ⑥에서 같음)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이하 ① 내지 ⑥에서 같음)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음.
② 집합투자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각 투자할 수 있음.
③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 집합투자증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⑤ 집합투자증권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 집합투자증권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의 투자재산으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⑦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 즉,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에 대한 단기대출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함)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⑧ 동일종목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함. 이하 본 투자제한 부분에서 같습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이하 본 투자제한 부분에서 같습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40%이하: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이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에 한합니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합니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합니다.
⑨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⑩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⑪ 파생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이 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⑫ 파생상품매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⑬ 파생상품매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⑭ 파생상품매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⑮ 집합투자업자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와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 가능.
⑯ 후순위 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①, ②, ⑧, ⑫ 내지⑭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①내지⑥, ⑧ 내지⑩, ⑫ 내지⑭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록셈부르그에 등록된 제이피모간펀드(JPMorgan Funds)에 속한 하위펀드인 JPMF-이머징 마켓 채권 펀드(JPMorgan Funds-Emerging Markets Bond Fund)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이머징 마켓 채권 펀드(JPMorgan Funds-Emerging Markets Bond Fund)는 자산총액의 67%이상(현금 및 현금등가물 제외) 신흥시장 정부 또는 정부기관 및 다른 국가에 상장되었지만 신흥시장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신흥시장 국가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 또는 신흥시장 국가들에서 상당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및 기타 채무증권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투자에는 외채재조정을 위한 Brady Plan에 따른 주권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 유로본드 형태의 국채 및 회사채, 양키본드 및 회사 및 정부가 발행하여 해당 국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및 어음이 포함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펀드인 JPMF-이머징 마켓 채권 펀드(JPMorgan Funds-Emerging Markets Bond Fund. 이하 “본 하위펀드”라고 합니다)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펀드명	JPMF- 이머징 마켓 채권 펀드(JPMorgan Funds-Emerging Markets Bond Fund)
기준통화	미달러화(USD)
벤치마크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Diversified (Total Return Gross)
투자목적	주로 신흥시장 채권 및 기타 채무증권에 투자하여 신흥국가들의 채권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투자정책	<p>본 하위펀드 총자산(현금 및 현금 등가물 제외)의 67% 이상을 신흥시장 정부 또는 정부기관 및 다른 국가에 상장되었지만 신흥시장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신흥시장 국가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 또는 신흥시장 국가들에서 상당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및 기타 채무증권에 투자합니다.</p> <p>이러한 투자에는 외채재조정을 위한 Brady Plan에 따른 주권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 유로본드 형태의 국채 및 회사채, 양키본드 및 회사 및 정부가 발행하여 해당 국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및 어음이 포함됩니다.</p> <p>본 하위펀드는 정규시장으로 분류되는 러시아증권거래소(RTS)와 모스크바은행간외환거래소(MICEX)에 상장된 증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규시장이 되기 전까지는 독</p>

	<p>립국가연합의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에는 (규제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모든 증권을 포함하여) 직접투자를 순자산의 10% 이하로 제한할 것입니다.</p> <p>본 하위펀드가 투자하는 증권에 관한 신용등급 또는 만기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p> <p>부수적으로 단기금융상품 및 신용기관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p> <p>본 하위펀드는 UCITS 및 다른 UCI들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본 하위펀드는 총 자산의 25%를 초과하여 전환사채에 투자하거나 총 자산의 10%를 초과하여 주식 및 기타 참여권에 투자하지 않습니다.</p> <p>본 하위펀드는 모든 통화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통화위험은 헷지됩니다.</p> <p>본 하위펀드는 헷지 목적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을 위하여 금융파생상품(현금결제상품 포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과 관련한 금융기법과 상품(증권대여 또는 환매계약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p>
위험특성	<p>본 하위펀드는 주로 전세계 신흥시장 채권에 투자합니다.</p> <p>자산등급 투자와 관련된 정치적 위험 및 신용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흥시장 채권은 높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동시에 투자자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p> <p>따라서, 투자자는 선진국 채권시장 투자에 비하여 자본손실 위험과 고수익 잠재력이 증대된 높은 변동성에 대비하여야 합니다.</p> <p>본 하위펀드는 미달러화로 표시되지만 수시로 상당한 양의 다른 통화 표시 자산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p>
펀드설립일	1993년 4월 22일
펀드규모	1억2천5백만 USD (2010년 6월 30일 기준)
펀드매니저	Pierre-Yves Bateau, 글로벌신흥시장채권팀 팀장, 2009년 10월 입사 Fortis Investments 신흥국가 채권관련 최고투자책임자(CIO), FP Consult (프랑스) 포트폴리오 매니저, BAREP Asset Management 신흥시장 포트폴리오 매니저, Groupe Ecole Supérieure de Commerce et de Management Tours-Poitiers(ESCEM) 재무학 학사 및 경영학 석사학위
운용회사	JPMorgan Asset Management (UK) Limited J.P. Morgan Investment Management Inc. JF Asset Management Limited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JPMF-이머징 마켓 채권 펀드(JPMorgan Funds-Emerging Markets Bond Fund)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조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조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수익자에게의 통보 등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외화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외화자산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 등의 기준통화에 대한 환헷지^{주1)}를 하고자 하며 목표 환헷지 비율은 최고 100%수준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환헷지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이머징 마켓의 채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적합한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의 변경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수익자에게의 통보 등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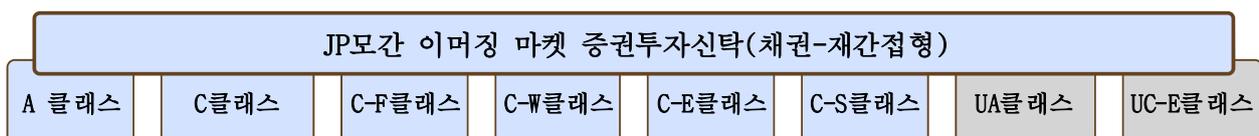
비교지수: J.P.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Diversified (Total Return Gross)^{주2)} 95% + 콜금리 5%

주1)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헷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헷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J.P.Morgan 이 작성하여 발표하는 신흥시장의 국가 또는 준국가 기관이 발행하는 미달러 표시 채무증권 (브래디본드, 유로본드, 대출채권등)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되며 하위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서 발생한 수익은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하여 본 문서의 작성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위험은 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 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기타 투자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투자 의사 결정시 참고하여야 할 모든 위험이나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니며, 향후 투자환경의 변화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임을 투자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투자신탁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하위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헷지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시장과 통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헷지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헷지기법은 지향하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환율변동위험	다양한 통화로 투자되는 집합투자재산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집합투자재산의 성과는 환관련 규제 법규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외화자산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의 기준통화에 대한 환헷지를 하고자 하며 목표 환헷지 비율은 최고 100%수준으로 할 것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게 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국통화 표시자산의 성과는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은 통화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무증권의 가격은 현행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주요 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신흥시장 포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p>신흥시장 위험</p>	<p>이 투자신탁의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몇몇 신흥 시장의 회계, 감사, 재무 보고 관련 기준은 국제 기준에 비하여 덜 엄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몇몇 기업들은 특정한 주요 공지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흥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위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상당수의 신흥 시장 국가들은 근대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거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와 관련하여 매우 높은 수위의 직접적인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갑작스럽고 광범위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경제와 투자신탁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시장의 국유화·몰수·세금징수·외국환 규제·정치적 변화, 정부 규제·사회적 불안정·외교 발전과 제한적 유동성, 가격 변동성, 외국인 투자 및 자본에 대한 규제와 같은 작은 자본 시장 투자의 위험, 그리고 높은 물가 인상과 금리, 정치·사회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신흥 경제와 관련된 위험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흥시장과 관련된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포트폴리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현함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러시아 투자 위험</p>	<p>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는 러시아의 정부와 규제 제도로 인해 투자자들은 정치적, 경제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증권시장은 때때로 높은 가격변동성 및 시장붕괴를 가져오는 시장 효율성 및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p> <p>하위 집합투자기구는 러시아의 러시아증권거래소(RTS)와 모스크바은행간외환거래소(MICEX)에 상장된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현재 증권의 소유 및 보관에 관한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주식보유는 회사나 그 등록대리인(하위 집합투자기구 수탁자의 대리인이 아니며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의 장부에 기재됨으로써 증명됩니다. 하위집합투자기구 수탁자나 그 하위 수탁자는 러시아 회사 주식보유를 증명하는 어떠한 증권도 보유하지 못하며 실효성 있는 중앙 예약시스템도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 및 실효성 있는 국가 규제와 집행의 부재로 인하여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사기, 과실 또는 단순한 간과만으로도 러시아 증권의 등록이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하위 수탁자는 강화된 실사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위 수탁자는 러시아 회사의 등록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등록 절차를 갖춘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투자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하위수탁자는 등록명부를 수령하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제위험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러시아 채무증권은 시장관행에 따라 도난, 과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대비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러시아 기관들이 보관하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증가된 보관위험에 노출됩니다.</p>
<p>하위 집합투 자기구 위험</p>	<p>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은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됩니다.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기존 수익자 또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추가적인 매입 또는 전환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하위 집합투자기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법률, 세금 및 규정등 제도적 위험</p>	<p>이 투자신탁이 운용되는 기간 중 법률, 세금 및 규정 등의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운용중인 투자신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p>
<p>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p>	<p>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p>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위험	금융시장은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위 집합투자기구와의 성과차이 위험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유동성 관리 목적을 위해 유동성 자산에 투자되므로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특히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이나 만기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되고 높은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주요 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집합투자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선물, 스왑 및 비상장 옵션 등과 같은 장외거래상품을 다량 보유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들은 때때로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외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투자신탁은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산 전체의 현금화가 요구되는 경우, 월단위로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특정 자산은 즉시 현금화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환매요구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매입/환매청구일과 매입/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매입/환매청구일로부터 매입/환매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펀드규모 위험	집합투자기구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 투자대상국가의 휴일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국가의 휴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 및 외환거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문서 제2부의 내용 중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위험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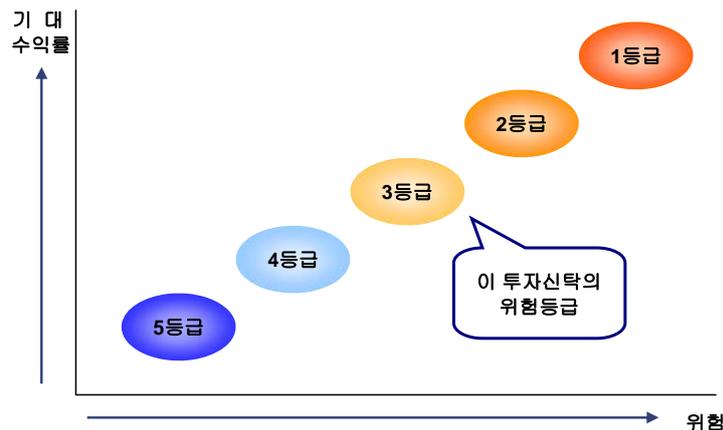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투자대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5단계^{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이머징 마켓의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5등급 중 위험수준이 **3등급(중간 위험)**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식에만 투자하는 주식형 증권집합투자기구보다 낮지만 선진시장의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보다는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국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채권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대상국의 채권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	위험수준	내 용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또는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 - 집합투자재산을 헷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 또는 파생상품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
2등급	높은 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또는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60%이하로 투자 - 집합투자재산을 투기등급의 채무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
3등급	중간 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또는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30%이하로 투자 - 자산배분형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등급의 채무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 - 집합투자재산을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파생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 직접 매입 청구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www.jpmorganam.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타인의 대리인인 경우, 매입신청인은, 당사자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매입신청인이 당사자 본인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자료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은 거절됩니다.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마켓타이밍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마켓타이밍 또는 이와 관련된 과도한 매매, 단기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켓타이밍은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의 불완전성, 결합 또는 시차를 이용하는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간의 매입, 환매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의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거나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다음의 자를 의미합니다.

-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 미국 이민귀화국(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십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십은 제외합니다.
-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선택신탁을 의미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주)}: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8 영업일(D+7)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주)}: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9 영업일(D+8)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주)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클래스)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라 합니다) 별로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 재산에 편입합니다.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 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하며, 이하 같습니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

종류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환매수수료
A 클래스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
C 클래스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C-F 클래스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C-W 클래스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C-E 클래스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C-S 클래스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A 클래스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C-E 클래스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다만,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 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른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기준일의 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과 신탁계약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주)}로 인하여 환매금액의 지급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 이후, 환매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제 1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기간 동안에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환매연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으로부터 분리하고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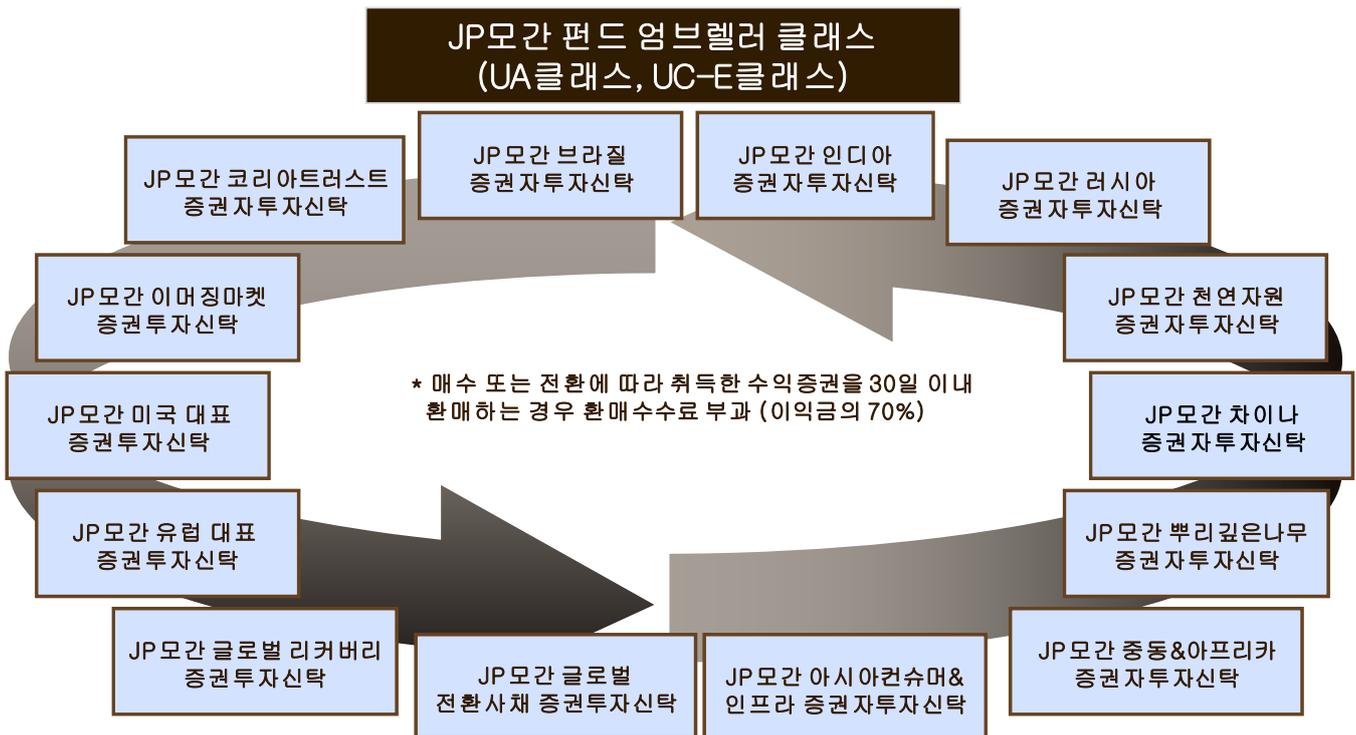
다. 투자신탁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UA 클래스 또는 UC-E 클래스 수익증권에 관하여 아래의 “JP 모간 펀드 엄브렐러 클래스”의 각 집합투자기구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법 제 232 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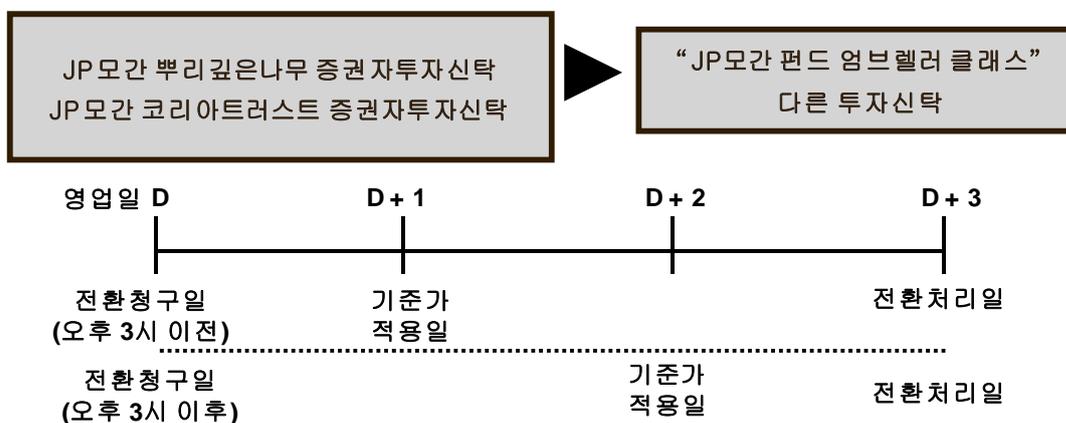
- ① JP 모간 글로벌 리커버리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② JP 모간 글로벌 전환사채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③ JP 모간 러시아 증권투자신탁(주식)
- ④ JP 모간 미국 대표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⑤ JP 모간 브라질 증권투자신탁(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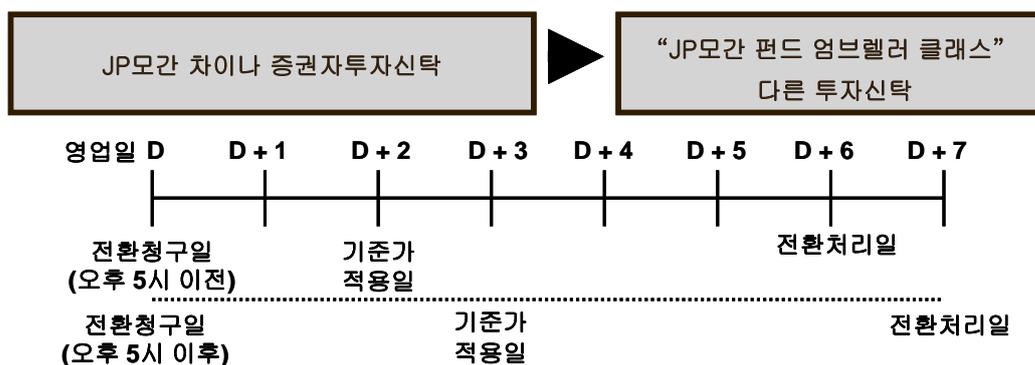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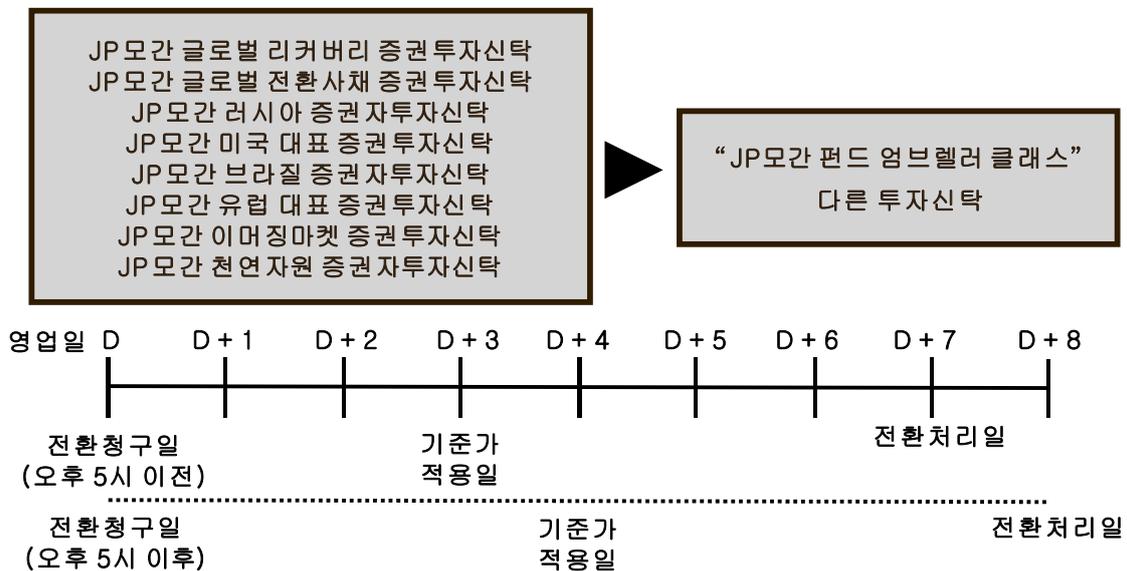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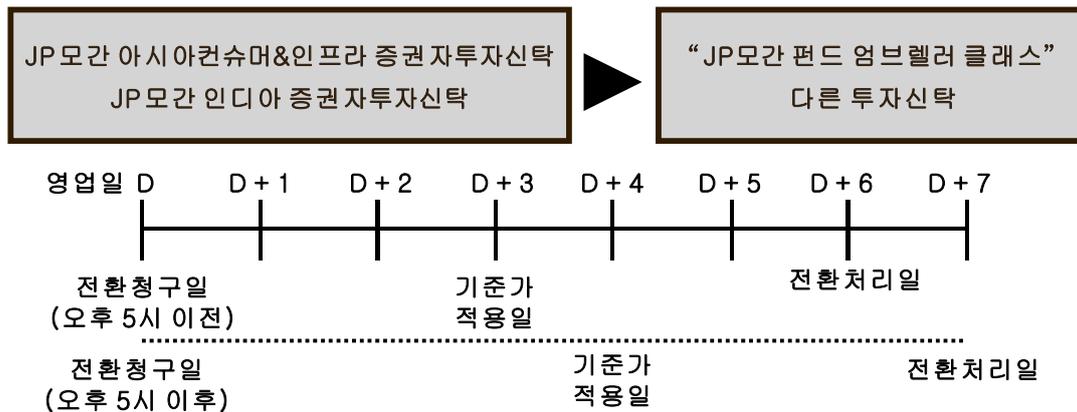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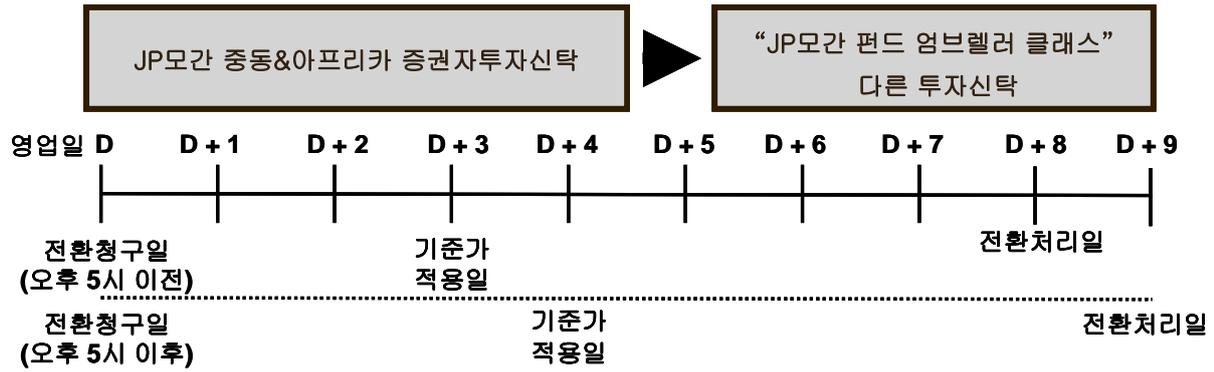
- ⑥ JP 모간 뿌리깊은나무 증권투자신탁(주식)
- ⑦ JP 모간 아시아퀀슈머&인프라 증권투자신탁(주식)
- ⑧ JP 모간 유럽 대표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⑨ JP 모간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⑩ JP 모간 인디아 증권투자신탁(주식)
- ⑪ JP 모간 중동&아프리카 증권투자신탁(주식)
- ⑫ JP 모간 차이나 증권투자신탁(주식)
- ⑬ JP 모간 천연자원 증권투자신탁(주식)
- ⑭ JP 모간 코리아트러스트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전환 절차 및 방법

수익자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전환절차는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각 집합투자기구의 전환처리일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집합투자기구별로 달리 적용되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3) 전환시 유의사항

UA클래스 또는 UC-E클래스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는 본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UA클래스의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의 UA클래스의 수익증권으로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UC-E클래스의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의 UC-E클래스의 수익증권으로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판매회사가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모든 클래스를 판매하지 않거나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모든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자의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다른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UA클래스나 UC-E클래스 수익증권에 투자하기 이전에 판매회사에 전환을 원하는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UA클래스나 UC-E클래스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다른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에 따라 취득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따라(이때 전환처리일을 매수일로 봅니다)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청구 시 전환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청구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전환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수익자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UA 클래스 또는 UC-E 클래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판매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부. 11. 다. (2) 전환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JP모간 뿌리깊은나무 증권투자신탁(주식) 및 JP모간 코리아트러스트 증권투자신탁(주식)에서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영업일로 합니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본 문서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제2부. 11. 나.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내지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일부환매”에 따라 전환을 연기하거나 전환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

	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 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공시시기	집합투자업자는 통보받은 기준가격을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매일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www.jpmorganam.co.kr)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www.kofia.or.kr)에 공시합니다.

주)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의 최종시가 또는 평가일의 공정가액(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을 사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동의하에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가 좀 더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	평가 방법
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 등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에 공표된 가격
비상장 주식, 채무증권, 장외파생상품 등	취득가격, 거래가격 및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정보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격, 환율 등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부실화된 자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수익증권의 종류(클래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판매보수와 관련해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클래스)	선취수수료	환매수수료
A	납입금액의 0.7% 이내 ^{주)}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C	-	

C-F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C-W	-	
C-E	-	
C-S	-	
UA	납입금액의 0.7% 이내 ^{주)}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UC-E	-	
지급시기	매수시	환매시

주) 선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주1)}

구분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총보수· 비용비율 ^{주3)}	증권거래 비용 ^{주4)}
	수익자의 자격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 회사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	기타비용 ^{주2)}			
A	제한없음	0.75	0.70	0.05	0.025	0.15	1.675	0.180	
C	제한없음	0.75	1.00	0.05	0.025	0.15	1.975	0.180	
C-F	전문 투자자 등	0.75	0.04	0.05	0.025	0.15	1.015	0.180	
C-W	Wrap account	0.75	-	0.05	0.025	0.15	0.975	0.180	
C-E	온라인 가입자	0.75	0.80	0.05	0.025	0.15	1.775	0.180	
C-S	집합투자 업자의 계 열회사	0.75	0.03	0.05	0.025	0.15	1.005	0.180	
UA	제한 없음	0.75	0.70	0.05	0.025	0.15	1.675	0.180	
UC-E	온라인 가입자	0.75	0.80	0.05	0.025	0.15	1.775	0.180	
지급시기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시	

주1)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되고 이로부터 인출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 수익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비용
- 법 제442조에 따른 분담금 비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있어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추정한 것으로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비율(Synthetic Total Expense Ratio)로서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있어서 지급되는 보수와 발생하는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추정한 비율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클래스는 운용보수가 없으며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1년 동안 지급한 증권거래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계산되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재간접형 투자신탁의 발생비용을 기초로 하여 추정한 비율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규로 설정되어 이 투자신탁이 지급하는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예상수수료 및 보수는 투자기간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주)}

(단위: 천원)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A 클래스	269	587	926	1,884
C 클래스	183	565	972	2,109
C-F 클래스	87	270	470	1,045
C-W 클래스	83	258	448	999
C-E 클래스	163	504	869	1,895
C-S 클래스	86	267	464	1,033
UA 클래스	153	474	817	1,787
UC-E 클래스	163	504	869	1,895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으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기의 표는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보수나 비용에 관한 확정적 자료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이익금에서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금전으로 분배하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당일 포함)로부터 9영업일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零)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신탁계약에 따라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익분배금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을 판매회사에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이 투자신탁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등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REITs를 포함함)를 처분 및 "JP모간 펀드 엄브렐라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함으로써 얻게 되는 배당금 및 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이익의 범위 내에서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수익증권의 매입, 보유, 전환, 양도, 환매 및 기타 분배 등(이하 "관련 사건"이라 합니다)에 대해 적용되는 거주지 혹은 설립지 법률에 의한 세금에 관하여 정통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 또는 본 문서의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어떠한 당사자도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과세 결과에 대하여 보증 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과세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과 관련 당사자들은 관련 사건에 따른 과세결과나 관련 사건으로 야기되는 어떠한

한 손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다음 설명은 본 문서 작성일 당시의 세금관련 한국법과 관행에 근거한 것이며 그 내용 및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은 전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의 과세결과를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의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2)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은 한국 세제 목적상 도관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투자신탁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신탁이 몇몇 외국 법역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처분으로 인한 이득, 기타 소득은 소득세, 원천과세 또는 기타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 세액공제 목적상, 투자신탁은 한국법상 법인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한국 세무당국에 14% 한도 내에서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원천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은 한국법 및 규정에 따라 아래 공식에 의하여 환급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외국 세액공제 제도는 투자신탁 회계연도의 기초하에서 적용되고, 투자신탁이 적격 해외 증권으로부터의 매매차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개인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매매차익은 개인거주자인 투자자의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 비과세 소득) / 국외원천과세대상 소득
-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취득세, 등록세 또는 증권거래세 등 투자재산의 매입과 보유에 관련하여 투자신탁이 지급하는 기타 세금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이 분배하는 이익과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도 이익(환매이익-매입비용) 및 “JP모간 펀드 엄브렐라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에 따른 이익(기존 수익증권의 환매이익-기존 수익증권의 매입비용)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주식관련선물(단, 채권, 수익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REITs와 같은 투자신탁 또는 펀드의 수익증권, 또는 해외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증권등의 예외가 있음)의 평가이익 및 매매차익을 이 투자신탁이 개별 투자자들에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비과세됩니다.

(4)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분배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과세소득 부분은 원천징수되며(2007. 6. 현재 개인에 대해서는 15.4%, 법인에 대해서는 14.0%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0%),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투자자 개인의 금융종합소득(배당, 이자 소득 포함)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소득 부분은 개인의 수입에 포함되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38.5%(2012년 이후 최고세율 36.3%로 인하)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됨). 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은 전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현재 최고 24.2% (2012년 이후 최고세율 22.0%로 인하)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의 적용을 받으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5) 전환시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이 투자신탁의 UA클래스 또는 UC-E클래스 수익증권을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다른 집합투자 기구의 UA클래스 또는 UC-E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시 수익증권의 매도 이익(기존 수익증권의 환매이익- 기존 수익증권의 매입비용)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전환시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과세소득 부분을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됩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신규 등록하는 투자신탁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신규 등록하는 투자신탁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신규 등록하는 투자신탁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신규 등록하는 투자신탁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신규 등록하는 투자신탁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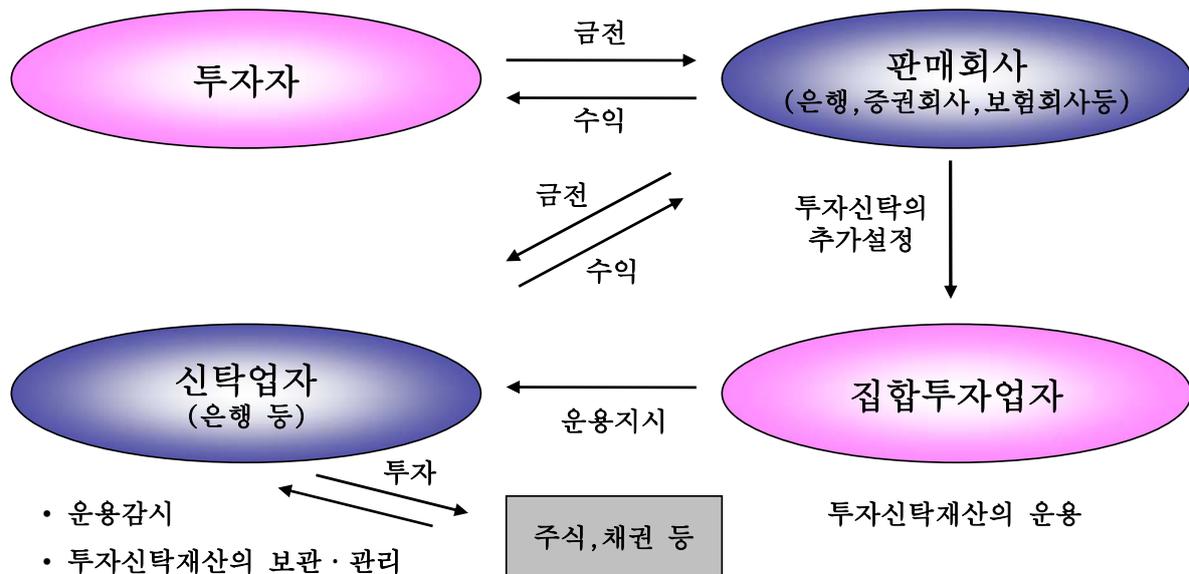
신규 등록하는 투자신탁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신규 등록하는 투자신탁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추가 설정을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금전 등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 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정동 34-35 제이피모간프라자 02-758- 5200 인터넷홈페이지: www.jpmorganam.co.kr
회사 연혁	2007. 2. 회사설립 2007. 5. 자산운용업 허가 취득 2008. 5.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2009. 2. 금융투자업 인가 (집합투자업 인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2009.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펀드 등록 2010. 1. JP 모간 펀드 엄브렐라 클래스 출시
자본금	240억원(2010년 6월말 현재)
주요주주현황	JPMorgan Asset Management (Asia) Inc. 100%

J.P.Morgan 자산운용은 JPMorgan Chase & Co.의 일원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투자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운용의 선두주자입니다. J.P.Morgan 자산운용은 1 조 1 천 6 백억 달러(2010. 06. 30. 현재 JPMorgan Chase & Co.의 고객 펀드)에 이르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전세계 41 개 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J.P.Morgan 자산운용은 강력한 현지시장 지배력과 함께 글로벌 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산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JPMorgan Chase & Co.(뉴욕 증권거래소 명칭: JPM)는 2010년 6월 30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2조 달러의 자산과 60여개국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선도적인 글로벌 금융서비스 회사입니다. JPMorgan Chase & Co.는 투자

은행, 소비자 금융서비스, 소기업 상업은행, 금융거래, 자산운용, 그리고 사모투자 부문의 선두주자입니다. JPMorgan Chase & Co.는 다우존스공업평균지수의 대상회사중 하나로서 미국에서 수백만의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세계 일류기업, 기구 및 정부 고객을 JPMorgan과 Chase 와 Washington Mutual 브랜드의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www.jpmorgan.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 투자컨설팅 업무
- 기타 부수 업무

(2) 의무 및 책임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자의 이익 보호를 추구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관련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2010.3.31	2009.3.31	항 목	2010.3.31	2009.3.31
유동자산	9,625	9,652	영업수익	11,925	6,772
고정자산	3,102	4,104	영업비용	12,203	12,285
자산총계	12,727	13,756	영업이익	-278	-5,513
유동부채	2,198	2,315	영업외수익	-	-
고정부채	-	-	영업외비용	725	19
부채총계	2,198	2,315	경상이익	-1,003	-5,532
자본금	24,000	24,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13,562	-12,559	특별손익	-	-
자본조정	91	-	세전순이익	-1,003	-5,532

라. 운용자산 규모 (2010. 6. 30. 현재)

(단위: 억원)

종 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재간접형	MMF	총계
수탁고	10,024	-	-	-	-	-	59	-	10,08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1)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로 HSBC펀드서비스(주)를 선임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이 투자신탁의 활동과 관련한 장부, 기록 및 명세서의 보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장부 등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열람을 위해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2)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HSBC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 1588-1770 [인터넷홈페이지: www.hsbc.co.kr]
회사연혁등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2) 주요업무

신탁업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추구합니다.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가 관련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 산출의 적정성 등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관련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신탁업자가 관련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HSBC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빌딩 6층 ☎ 02)3771-9800 [인터넷홈페이지: www.hsbc.co.kr]
회사연혁등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2) 주요업무

-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의 계산
- 기준가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통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 수행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일반사무관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관련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집합투자업자는 아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채권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KIS 채권평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삼천리빌딩 2층 T. 02-3215-1400	설립일 : 2000. 6. 20
한국채권평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광화문빌딩 9층 T. 02-399-3350	설립일 : 2000. 5. 29
나이스채권평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T. 02-398-3900	설립일 : 2000. 6. 16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자료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 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만약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냅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만 구성되는 수익자총회에 위 의결권 행사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함)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현재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며,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반대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록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상환금등을 판매 회사에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집합 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염려되는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열람제청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교부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투자신탁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신탁업자 등 금융투자업자는 관련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등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제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제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한 후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되며 판매 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투자자에게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하 “기준일”)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매매회전율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 제5항에 정해진 사항

-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에 정해진 사항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함)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또한 판매회사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이 정하는 주식(주권상장법인인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할 경우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위의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최근 1년간 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거래한 내역은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최근 1년간 이 투자신탁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의 거래는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인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증권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회사 선정 목적 및 필요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중개회사의 역량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 및 펀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회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수행한 평가에 기한 평가결과에 따라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장내파생상품 거래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1. “법”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추후에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2.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신탁업자”라 함은 HSBC은행 서울지점을 의미합니다.
4. “신탁계약”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및 추후에 변경되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의미합니다.
5. “영업일”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의미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6. “증권시장”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 및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7.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함은 HSBC 펀드서비스(주)를 의미합니다.
8. “집합투자업자”라 함은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를 의미합니다.
9.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i)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 (ii)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 (iii) 집합투자업자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그 배우자, (iv)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 분의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그리고 (v)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를 의미합니다.
10. “투자설명서”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의미합니다.
11. “투자신탁”이라 함은 ‘JP모간 이머징 마켓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을 의미합니다.
12. “판매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판매·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의미합니다.
13. “외화자산”이라 함은 한국 외에서 발행되거나 거래되고 원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을 의미합니다.
14. “금융투자협회”라 함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의미합니다.
15. “전환”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JP 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라 합니다)중 하나의 투자신탁의 UA 클래스 또는 UC-E 클래스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전환대상투자신탁”)의 UA 클래스 또는 UC-E 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 JP 모간 글로벌 리커버리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나. JP 모간 글로벌 전환사채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다. JP 모간 러시아 증권투자신탁(주식)
 - 라. JP 모간 미국 대표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마. JP 모간 브라질 증권투자신탁(주식)
 - 바. JP 모간 뿌리깊은나무 증권투자신탁(주식)
 - 사. JP 모간 아시아퀀슈머&인프라 증권투자신탁(주식)
 - 아. JP 모간 유럽 대표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자. JP 모간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차. JP 모간 인디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카. JP 모간 중동&아프리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타. JP 모간 차이나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파. JP 모간 천연자원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하. JP 모간 코리아트러스트 증권자투자신탁(주식)

본 문서에서 인용되는 법과 규정 및 신탁계약의 조항들은, 추후 개정, 교체, 제정되는 해당 법과 규정 및 신탁계약 조항을 포함합니다.